

부산기업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『부산형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』 안내문

산업안전관리에 취약한 부산지역 50인(역) 미만 사업장을 자격 요건이 되는
공동안전관리자가 지역기업을 지킴으로써 노동시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

- 상시근로자 50인(역)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(이하 중처법)이 '24년 1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부산경총에서는 '24년 4월 1일 대응센터 및 부서를 설립
-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, 대기업에 비해 안전보건 역량이 부족한 만큼 지원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산업안전의 중요성과 대진단을 통해 맞춤형 산업안전 체계구축을 지원

1. 기업대상 :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장 (건설현장 제외, 건설업 본사 신청 가능)
2. 지원내용 : 산업재해예방과 대응을 위해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참여기업에 배정
▶ 스마트안전장비 및 시스템 정착, 산업안전 관련 행정업무 처리, 재정지원사업 신청업무 등을 추가 부여

<공동안전관리자의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내용>

단계	주요 수행 내용	구 조
1단계-기반구축 (담당지정/사전교육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역할 부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주와 협의하여 사업장별로 담당자 지정, 명확한 미션 부여 ▶ 안전보건교육·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 실시 (전문교육:산업안전보건공단) 	
2단계-현장안착 (담당자 역할 수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안전관리 담당자 역량강화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담당자 조치사항 지속적 숙지 - 공동안전관리자가 사업장 현장점검 실시(담당자 1:1 안내 후 자체 점검수행 지원) ▶ 안전관리 담당자가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	
3단계-안전관리 체계구축 (경영자 리더십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경영자 리더십 계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주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관심 유도 - 안전보건 목표 수립 및 안전 투자 조인 ▶ 근로자 참여 안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안전제안제도 운영, 위험성평가 참여 	

3. 사업구조 : 『산업안전보건공단 + 부산경영자총협회 + 참여기업』 3자 협약구조로 운영
4. 지원규모 : [참여기업] 50개사 ↔ [공동안전관리자] 4명
※ 신청기업 정보 확인 후, 지역(근거리) 또는 업종에 따라 그룹화 예정
5. 주요내용 : 참여기업에 공동안전관리자가 정기적 사업장 방문 컨설팅을 통해 위험성 평가 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점검사항 등을 관리
6. 운영비용 : 기업당 月 15만원 부담 시, 공동안전관리자 상시 활용 가능
▶ 운영기간: '24년 6월 중 ~ 12월 31일까지 (※ '25년 운영여부는 추후 협의)
7. 참여희망 신청서 (작성 후, 이메일 bns@bsef.kr로 기한(~'24.6.28.) 내 제출)

기업명		사업자번호	
담당자명		부서 및 직급	
연락처		참여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1유형 <input type="checkbox"/> 2유형